

의안번호	2211730
의 퇴 인	서영석의원
회 답 일	2025.08.21.
추계번호	25C399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3 (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처방전 발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3 (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(안 제18조의3)

- 보건복지부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직접 구축·운영하거나,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하고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비용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투입 인원의 수가 개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, 현시점에 시스템 구축 규모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범위, 개발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

-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직무별 투입 인력의 수와 투입 기간, 평균 임금 등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필요 경비와 기술료 등 부대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추계
 - 그러나, 안 제18조의3제5항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현재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서비스 분석을 통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(ISP)과 법 제도 및 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 재설계(BPR) 사업을 구상 중에 있음¹⁾
 - 개정안에 따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규모는 ISP 수립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므로, 현시점에서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개발 규모와 해당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용량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

1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시스템 구축계획(ISP) 수립과 업무 재설계를 위한 예산(7억원)이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의 중에 있음